

「평창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3일 박춘희 의원이 발의하고, 2023년 4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1. 제안이유
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우리 군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한부모가족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의 준수 책무(안 제3조)
- 나.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의무(안 제4조)
- 다.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(안 제5조 ~ 제6조)
- 라.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(안 제7조)
- 마. 민간단체 등의 지원(안 제8조)
- 바. 지원의 중지 및 환수(안 제9조 ~ 제10조)

3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우리 군 한부모가족의 생계안정과 복지증진을 지원함으로써
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국·도비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으나,

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서
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고,

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자치사무라 할 것이므로,

○ 관내 한부모가족의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

자주적인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

본 조례안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.

○ 검토결과,

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.

※ 관련 입법례: 전국 126개 지자체, 도 내 5개 시·군

(강원도, 동해시, 삼척시, 속초시, 인제군)

붙임 1 | 평창군 한부모가족 지원현황

○ 한부모가족 현황(2023. 3. 31.기준)

- 한부모가족 현황

구분	계		모자가정		부자가정	
	세대	인원	세대	인원	세대	인원
2021년	62	91	44	66	18	25
2022년	68	92	49	67	19	25
2023년	66	93	48	68	18	25

※ 인원: 세대주 제외

- 읍면별 현황

구분	계		모자		부자	
	가구	인원	가구	인원	가구	인원
계	66	93	48	68	18	25
평창	14	21	10	14	4	7
미탄	7	8	2	3	5	5
방림	0	0	0	0	0	0
대화	7	10	7	10	0	0
봉평	6	6	6	6	0	0
용평	3	5	2	3	1	2
진부	16	28	11	20	5	8
대관령	13	15	10	12	3	3

○ 지원내용

구분	대상		지원내용	비고
아동 양육비	중위소득 60% 이하: 만 18세 미만 자녀		월 200,000원	국비
추가 아동양육비	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	만 5세 이하 아동	월 50,000원	
	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	만 5세 이하 아동	월 100,000원	
		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	월 50,000원	
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	중위소득 65% 이하: 만24세 미만 한부모		월 350,000원	
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	중위소득 72% 이하: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생활,자립지원 등 정책연계 및 각종 정책정보 안내 · 양육 용품 · 병원비(연100만원 내) 	
중고생 학용품비	중위소득 60% 이하	중·고등학생	연 83,000원	
초등학생 학습지원비		초등학생	연 100,000원	
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		대학신입생	1회 1,700,000원	
난방비		생계급여 수급자 제외	연 200,000 ~ 350,000원	

○ 지원실적

- 국비사업

(단위:명, 천원)

구분	아동 양육비		추가 아동양육비		중고생 학용품비		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	
	인원	집행액	인원	집행액	인원	집행액	인원	집행액
2021년	91	178,200	9	5,800	12	996	-	-
2022년	92	186,100	9	7,450	11	913	-	-
2023년	94	38,800	10	700	-	-	-	-

- 도비사업

(단위:명/가구, 천원)

구분	초등학생 학습지원비		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		난방비	
	인원	집행액	인원	집행액	가구	집행액
2021년	8	800	1	1,700	51	17,850
2022년	8	800	-	-	51	17,250
2023년	-	-	-	-	-	-

※ 난방비 지원 : 생계급여 수급자(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) 지원 제외